

'93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 보고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 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2월 16일 남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2년 12월 17일 회부

다. 상정 일자 : 제18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1992년 12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황경조)

가. 제안 이유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문현동 603-68번지의 2필지 대지 59㎡는 도로개설로 인하여 남게된 소규모 짜투리 땅이거나, 도시 저소득 주민의 환경개선사업 승인 지역내의 주택부지로서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구유 잡종재산 이므로 이를 매각 처분하여 사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저소득 주민의 환경개선사업의 지원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남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 골자

제출한 동의안의 매각대상 토지는 도시계획사업시행후 발생한 잔여 토지로 토지의 형태나 규모로 보아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이거나, 도시 저소득 주민의 환경개선사업 승인 지역내의 주택(건물) 부지임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와 부산직할시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무상)

문현동 603-68번지의 경우 88년 문현동 603-112 일부가 소방도로 개설로 분할되고 남은 땅 5㎡는 문현동 603-65 여중성이 85년부터 점용료를 납부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으로서 면적이 협소하여 구에서는 활용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적법한 경우 대상자에게 매각하므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사료되며,

남구 문현동 59-13번지 대지 102㎡중 4㎡는 92년 11월 도로개설로 인하여 편입되고 남은 잔여땅으로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 구에서 활용 가치도 없고 방치할 경우 각종 쓰레기 등이 투기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적법 적정한 매수자가 있을 경우 매각 조치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망미동 774-265번지의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92.10.30 부산직할시로부터 양여된 재산으로 이 토지는 본사업 지역내의 부지로서 매수신청자인 이인배는 본 토지위에 68년부터 스테트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매수절차가 적법하다면 매각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박한성 위원	재무과장 황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매각 대금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 제일높은 가격으로 결정했을 경우 매입대상자가 매입을 안할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매입토록 권유하고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지가와 감정가격및 실제 가격중 제일높은 것으로 결정함. · 매입대상자로부터 건적을 받는데 낮은 건적금액이 나오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있으며, 실제 거래 가격으로 매입토록 종용하고 있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점유 변상금이 부과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 주고 있음. · 권유는 하고 있지만 매입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는 강매할 수는 없고 변상금 부과만 하고 있음.
배종환 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구 망미동 774-265번지 대지 50㎡매각 대상지에 건물이 있는지? ·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인지, 허가난 건물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이주 지역으로 스투트 집이 점유하고 있음. · 1968년도 부산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부산시장이 이 일대에 건축승인을 해주어 일제정비를 하였으며 건축허가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